

「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길 의원

2. 찬 성 자: 김영태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의 비만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구미시민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6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12조, 제19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비만 개념 정의를 보완하고,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비만의 개념을 보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하고,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정책 적용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목표와 추진과제, 재원 확보 방안, 세부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비만예방 실천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
- 아울러 비만예방 사업이 실질적인 시민 체감 효과로 이어지도록, 교육·홍보 중심의 캠페인뿐 아니라 건강친화 급식, 걷기 좋은 환경 조성, 걷기 챌린지 등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